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 시 : 2020년 4월 27일 10시

장 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 민주노총)

산재 피해 유가족 '다시는' · 국회의원 한정애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 여는 발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상진
- 유가족 발언 : 고 김태규 노동자 누나 김도현
-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순위 발표 사회자
- 현장발언 :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
- 2020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발표 사회자
- 특별상 발언 1 : 고 문중원 기수 아버지 문군옥
- 특별상 발언 2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매일노동뉴스 대표 부성현
- 퍼포먼스

<자료 순서>

□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1
□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대우건설)	6
□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별 사망자료	9
□ 2020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마사회, 고용노동부)	12
□ 기자회견문	16
□ 유가족 발언(김도현)	18
□ 참고자료 1	20
□ 참고자료 2	26
□ 참고자료 3	30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매년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추락 끼임 등으로 매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의 구조를 만들고 방치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노동자 사망을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 '2020 최악의 살인기업'은 2019년,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하루에 5~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2019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조치현황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고용노동부 통계가 하청 산재 문제가 포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 주소지 검색 등을 통해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의 원청을 밝혀, 원청의 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특별상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2019	포스코건설		- 2018년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4명이 5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등 한 해 동안 10명이 사망함으로써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2018	삼성중공업		- 2017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이던 당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폴리앗 크레인에서 하청노동자 6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7	현대중공업		- 노동자 사망 다발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2016년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4월에 6명 사망, 11월 에 1명이 사망하였음. -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2016	산업재해	한화케미칼	- 한화케미칼은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하고 녹색기업으로 인증 받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을 표면상으로 보였으나, 2015년 7월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6명 사망사고에 있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원청업체로 책임을 지지 않았음.
	시민재해	삼성서울병원	- 메르스 사전 예방 조치 실패 및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방해, 지연하여 메르스 사태 확산에 주범으로 역할을 하였음.
2015	(건설업)현대건설		- 2007년,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 -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현대중공업		-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2017 최악의 살인기업
2014	(건설업)대우건설, (제조업)현대제철		-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 대우건설, 2011 최악의 살인기업
2013	(건설업)한라건설		- 2012년 한 해 동안 한라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LG화학		- 2012년 LG화학은 OLED 폭발사고로 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2	(건설업)현대건설	-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7,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제조업)STX조선해양, TK케미컬	-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1	(건설업)대우건설	-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3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2014 최악의 살인기업
	(제조업)대우조선해양	-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2010 최악의 살인기업
2010	(건설업)GS건설	-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4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2006 최악의 살인기업
	(제조업)대우조선해양	-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6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2011 최악의 살인기업
2009	코리아2000	- 2008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4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8	한국타이어	-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물질사용 등으로 1년6개월 사이 15명의 노동자를 숨지게했음
2007	현대건설	- 2006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 2012, 2015 최악의 살인기업
2006	GS건설	- 2005년 10월 6일 'GS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게 하였음. - 2010 최악의 살인기업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명단

2019	서부발전	- 2014~2018년 발전5사 전체 사망자 20명 중 서부발전이 7명이었고, 현장 노동자들의 1년간 10여 번의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하여 결국 김용균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보건복지부	- 병원 자본이 병원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잔인한 방식의 운영구조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일터 괴롭힘, 태움으로 인한 자살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사의 과로사, 과로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2018	우정사업본부	-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여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과 노동조건을 악화를 방치하여 26명의 노동자를 과로사, 과로자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
	국토교통부	- 2017년 10건의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21명이 노동자가 죽는 거듭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타워크레인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사고예방에 실패하였음.
2017	교육부	-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통해 사망, 사고, 자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에 대한 학생보호조치와 안전장치를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음.
	우정사업본부	- 거대공기업으로서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 노동자를 과로사하게 하였음.
2016	전국경제인 연합회 (전경련)	- 전경련은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 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안전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
	질병관리본부	- 전염병 방치, 대응 역량 부족으로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대되게 하여 38명 사망, 186명 확진, 16,572명 격리 등의 사태로 확산되게 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기업(옥시 외 21개 제조·판매 기업)	- 제조물에 대한 책임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여 239명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고 1,528명이 피해를 입게 하였음.
2015	-	-

2014	규제개혁위원회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다해야 하나, 사회안전망이나 환경 노동 분야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 노동환경을 저해시켰음.
2013	삼성전자	-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2012	삼성전자	-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2011	이명박 대통령	- 4대강 공사를 통해 노동자가 20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0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 희망근로 작업 중 27명을 죽게 만들고, 2,372명을 다치게 한 바 있음.

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근거자료

- 대상 년도 : 2019년
- 근거자료 : 2019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조치현황
- 통계기준 참고 :
 - 산업재해 사망 중 사고사망만 포함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은 매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조치현황 통계를 기초로 하청 산재사고사망 재해를 원청으로 합산하여 선정. 2020년 최악의 살인기업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중대재해 보고는 사망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이 관할 노동청에 제출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산재보험 통계와는 보고대상과 기준 적용 일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중대재해 보고는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함. 산재보험 통계는 교통사고, 직업병 등을 포함하고,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1) 2020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순위

순위	기업	사망자 수	비고
1위	대우건설	7명	전원 하청노동자
2위	현대건설	6명	5명 하청노동자
3위	GS건설	5명	3명 하청노동자
공동 4위	롯데건설	4명	전원 하청노동자
	한신공영		전원 하청노동자
	수성수산		전원 이주노동자
공동 7위	LG화학	3명	전원 하청노동자
	은성산업		2명 하청노동자
	서희건설		전원 하청노동자
	유원조경개발		
	중흥토건		2명 하청노동자
	포스코건설		전원 하청노동자
	한화 대전사업장		

[고용노동부 2019년 중대재해 조치 현황 보고 / 원 하청 재분석]

2) 2020 최악의 살인기업 : 대우건설

○ 선정근거

-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는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은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에 의원실에 제출한 <2019 중대재해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7명의 노동자를 기업살인함으로써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인 살인기업이다. 대우건설에서 사망한 7명의 노동자는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 대우건설은 2010년 13명, 2013년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최악의 살인기업에 2회나 선정된 바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살인기업이다. 또한 2015년 발표한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에서도 102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현대건설에 이어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사망	부상	사고경위	산재발생일	발생형태
2	0	(경기) 시흥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을 위해 피워 놓은 숯탄 보충작업을 하던 중 숯탄이 연소되며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사하여 하청노동자 2명 사망	2019년 1월 16일	질식
1	0	(서울) 전철 공사 현장에서 용접을 위해 이동 중 토사 상차용 버킷에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후 치료 중 사망	2019년 3월 27일	깔림
1	1	(경기) 부천시 소재 주거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르래를 이용하여 공사장 2층으로 대형 환풍기를 끌어 올리는 작업 중 하청노동자 2명이 추락하여 1명이 사망	2019년 3월 30일	떨어짐
1	0	(경기) 파주시 소재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향타기로 땅에 말뚝을 박는 작업 중, 해머가 이탈 후 낙하하여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	2019년 3월 31일	깔림
1	0	(경기) 광명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화물차에서 지게차로 철근을 하역하는 작업 중 철근이 낙하하여 지나가던 하청노동자를 가격하여 사망	2019년 7월 25일	깔림
1	0	(경기) 과천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유리창 고정 작업을 하다 떨어져 하청노동자 사망	2019년 11월 5일	떨어짐

- 2018년 김형 대표이사의 대우건설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건설업 사망사고 다발주체 순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함으로써 2018년 건설회사 산재사고사망 순위 2위를 차지했다.
- 2019년 매출 8조 6519억, 영업이익 3641억의 대우건설의 경영실적은 최악의 살인기업 2회, 건설회사 산재사고사망 순위 2위라는 대우건설과 김형 대표이사의 살인에 가까운 기업경영 행위로 인한 성과였음이 2019년 7명의 산재사고사망으로 드러났다.
- 김형 대표이사는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안전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 라고 이야기했지만 2019년 대우건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대우건설은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살인기업이었다.
- 김형 대표이사와 대우건설의 살인적인 경영행위는 2019년 신년사 이후 3달이 채 지나지 않은 3월 4일 사이에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사망 이후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2019. 04.15 ~ 5.30)에서 전국 51곳의 대우건설 공사 현장 가운데 80%인 40곳의 현장에서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 매해 최악의 산재사고 사망을 일으키고,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에도 불구하고 기획감독 이후에도 대우건설에서는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 2020 최악의 살인기업에 대우건설을 선정함으로써 2005년 이후 1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최악의 살인기업 대우건설과 2018년 취임이후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만든 김형 대표이사의 살인적인 경영행위를 고발한다.

3) 최악의 살인기업 사망재해 현황

- 2020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13개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51명 중 40명이 하청업체의 노동자였다(78.4%). 이는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9개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하청업체 비율(68%)보다 10%나 증가한 것이다.
- 김용균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극심하며, ‘죽음의 외주화’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원청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궁극적인 이윤의 집결지이자 실질적 결정권자인 (원청)기업이 직접 처벌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계속되는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별 상세 내역

최악의 살인기업 1위 - 대우건설 7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재해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2019-01-16	광영개발	경기 시흥시 대야동	2	질식
2019-03-27	한준건설	서울 강서구 방화동	1	깔림
2019-03-30	세일에프에이	경기 부천시 중동	1	떨어짐
2019-03-31	도양기업	경기 파주시 월롱면	1	깔림
2019-07-25	우창건설	경기 광명시 철산동	1	깔림
2019-11-05	엘지하우시스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떨어짐

2위 - 현대건설 6명 사망(건설업) : 5명 하청

재해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2019-03-04	범강	경기 김포시 고촌읍	1	맞음
2019-07-31	한유건설	서울 양천구 목동	3	익사
2019-08-31	설성산업	충북 충주시 살미면	1	깔림
2019-12-11	엘지하우시스	서울 영등포구 가산동	1	떨어짐

3위 - GS건설 5명 사망(건설업) : 3명 하청

재해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2019-02-10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	질식
2019-03-18	상명건설	경북 안동시 풍천면	3	무너짐
2019-05-28	-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1	맞음

공동 4위 - 롯데건설 4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재해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2019-01-16	원영건업	경기 화성시 오산동	1	떨어짐
2019-01-22	유성종합설비	경기 이천시 안흥동	1	떨어짐
2019-01-25	원영건업	경기 김포시 고촌읍	1	깔림
2019-12-02	대흥토건 삼양중기	서울시 강동구 마곡동	1	끼임

공동 4위 - 한신공영 4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재해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2019-06-06	중현테크	부산 기장군 일광면	2	떨어짐
2019-06-25	정인이엔씨	충북 음성군 금왕읍	1	깔림
2019-10-19	정석건업	경기 화성시 영천동	1	부딪힘

공동 4위 - 수성수산 4명 사망(제조업) : 전원 이주노동자

재해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2019-09-10	-	경북 영덕군 축산면	4	질식

공동 7위 - IG화학 3명 사망(제조업) : 전원 하청

재해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2019-05-13	에스켄	충북 제천시 왕암동	3	폭발

공동 7위 - 은성산업 3명 사망(건설업) : 2명 하청

재해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2019-04-11	홍익건설	인천 남동구 고잔동	1	떨어짐
2019-08-13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1	기타
2019-10-31	백마건업	서울 도봉구 방학동	1	떨어짐

공동 7위 - 서희건설 3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재해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2019-08-14	리프트서진	강원 속초시 조양동	3	떨어짐

공동 7위 - 유원조경개발 3명 사망(기타업종)

재해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2019-10-21	-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3	기타

공동 7위 - 중흥토건 3명 사망(건설업) : 2명 하청

재해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2019-04-22	무등하우징	전남 나주시 노안면	1	떨어짐
2019-05-09	용성기업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1	떨어짐
2019-05-13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	떨어짐

공동 7위 - 포스코건설 3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재해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2019-05-25	화승토건	경기 하남시 감일동	1	떨어짐
2019-06-11	여흥건설	인천 남구 도화동	1	맞음
2019-08-21	금농토건	전남 광양시 금호동	1	익사

공동 7위 - 한화 대전사업장 3명 사망(제조업)

재해발생일	하청	사고현장	사망(명)	발생형태
2019-02-14	-	대전 유성구 외삼동	3	폭발

2020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1. 한국마사회

○ 선정근거

- 한국마사회가 만들어낸 죽음의 레이스는 2019년 11월 29일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사망케 했다. 부산 경남 경마장 소속 문중원 기수는 “도저히 앞이 보이질 않는 미래에 답답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부당한 지시가 싫어서 마음대로 타버리면 다음엔 말도 안 태워주고, 어떤 말을 타면 다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목숨 걸고 타야만 했고 비가 오던 태풍이 불던 안개가 가득 찬 날에도 말 위에 올라가야만 했다.” 라며 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교사의 부당한 지시와 마사회의 묵인, 마사회 심사과정의 비리 등 복마전 같은 마사회의 적폐권력 청산에 저항하다 세상을 떠난 것이다.
- 사망만이 문제는 아니다.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가 진행한 마사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마사회에 소속된 기수의 재해율은 최대 111.3%에서 최소 65.3%로 대다수의 기수가 재해를 경험했다. 전 업종 재해율 0.54%에 비해 무려 135배에 달하는 수치다. 마필관리사 역시 최대 재해율이 18.6%에서 12.35%로 전 업종 재해율과 비교해 대단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 한국마사회의 재해율이 이렇게 높음에도, 마사회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는 산재은폐를 자행해 왔다.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산재발생 보고 의무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서 위반횟수 50건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고, 부산경남경마본부도 12건으로 3위에 올랐다. 잦은 재해를 은폐함으로써 재해 예방의 책임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 마사회의 적폐경영으로 인한 부조리와 갑질로 계속되는 노동자 사망과 높은 재해율, 그리고 종사자들의 건강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왔다. 2017년, 2명의 마필관리사가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관리사와 기수 등 마사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에서의 불안정성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를 높였고, 말관리사 34%의 우울수준이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사회 노동자들의 불건강 상태 지속은 고용노동부가 경마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고려하라는 개선 권고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한국마사회의 개선은 없었다.

- 노동자 6명의 자살과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이 있었음에도 한국마사회는 아무런 개선도 없었다. 오히려 선진경마라는 허울 아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켰고 결국 2019년 부조리를 고발하던 문중원 기수를 자살로 내몰았다. 마사회는 문중원 기수의 사망 이후 책임을 회피하여 장례를 100일 가까이 지낼 수 없도록 만들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의 투쟁과 노력 끝에 재발 방지에 합의하였음에도 열사의 발인 날 이를 뒤집는 시도까지 하였다.
- 4월 8일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는 한국마사회의 적폐·부조리를 청산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 적폐청산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기수, 관리사 등 경마장 내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일터,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 한국마사회는 문중원 열사의 죽음과 <2020 살인기업 선정식 특별상> 수상을 계기로 적폐·부조리를 청산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

○ 선정근거

- 이주노동자의 질식사와 추락사가 끊이지 않았다. 7월 31일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수몰 사고로 이주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9월 10일 경북 영덕의 오징어 젓갈 공장 폐기물 지하 탱크에서는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으로 사망했다. 이주노동자는 이른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 제조·건설 현장을 떠받치고 있으면서, 위험의 외주화 사다리에서는 가장 밑에 매달려 있다.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언어 및 문화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늘 산재사망 위험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 사업주를 관리 감독하고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노예 부리듯 사 용하도록 한다.
- 2019년 한 해 동안 104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4년 전체 산재사망 이주노동자가 85명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54.1%가 급증했다. 2019년 1~6월 상반기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465명 중 42명, 약 10%가 이주노동자였다. 한국의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 미만인 점에 비춰볼 때 매우 심각한 산재사망률이다. 상반기 전체 사고 재해자 4만4331명 중 이주노동자는 3,427명(7.7%)이었다. 질병 재해자 7,328명 중 110명(1.5%)이, 질병에 따른 사망자는 650명 중 16명(2.4%)이었다. 사고재해, 질병 재해 및 사망자가 현저히 낮

은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망사고가 아니면 이주노동자의 산재가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1. 최근 6년간 이주노동자 재해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6,044	85	6,449	103	6,728	88	6,302	107	7,239	136	7,538	104

- 현재 농어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이주노동자다. 고령화된 농어촌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약 2만3천명인데 문제는 농촌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1일부로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까지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농업은 예외이다. 근로기준법은 농축산업 등 노동자는 노동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해 예외로 두고 있다. 결국 농어촌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하고도 초과 노동시간에 따른 수당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 2019년 이주와인권연구소가 전국 22개 인권단체와 함께 실시한 ‘2018년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업 중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응답자 세 명 중 한 명은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못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치료 없이 귀국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은 이주노동자들도 있었다. 충청남도가 이주와인권연구소를 통해 진행한 ‘충남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2019)’에서도 470명 응답자 중 37%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회사에서 신청을 막았다(27.1%)가 가장 많았는데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진입이 시작부터 가로막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로 산재보험 신청 진입장벽이 낮아지긴 했으나 언어문제, 정보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이주노동자에게까지 제도 폐지 이점이 전달되었는지 파악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오래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프거나 다치지 않았다(25%), 산재보험 자체를 모른다(22.9%), 신청하는 방법조차 모른다(10.4%)고 응답이 뒤를 이어 이주노동자의 편리한 산재보험 접근성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함을 증명했다.
-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현장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등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뿐 사업주는 관련 교육을 받을 의무 자체가 없다. 오로지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기법 등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교육받을 뿐이다.

- 2004년부터 실시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눈물과 신음으로 얼룩져있다.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는 원천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고, 사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이직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이주노동자가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사업주가 고의로 이탈 신고를 하면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 상태가 된다. 고용 상태가 체류의 법적 권한을 결정하는 법·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극도로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안전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을 시켜도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다.
- 고용허가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멈출 수 없다. 노동부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며 절규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그래야만 임기 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공허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기자회견문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코로나19 재난 위기 상황에도 노동자 177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위협의 외주화 금지하라!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한국에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멈춰진 경제활동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항공, 철도, 지하철 운행이 줄고 휴직과 휴업이 넘쳐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올해 1월부터 4월 15일까지 노동자 177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대책은 칭송받고 있지만 정작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과 산재로 사망하고 과로사로 죽고 있다.

2020년 1월 초 노동부는 전년 대비 산재사고 사망이 116명 줄었다고 발표하며, 산재사고 사망 통계 시작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고 재벌 대기업은 개정 산안법 무력화 힘을 집중한다. 심지어 경총과 전경련은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코로나19까지 끌어들이 각종 안전보건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역시 이들 요구의 상관관계 검토 없이 요구를 받아들였거나 받아들일 태세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임기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견잡을 수 없는 노동안전보건 후퇴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당장 4월에만 현대중공업에서 4일 간격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해 한 명은 위중하고 한 명은 사망했다.

2020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대우건설이다. 2019년 한 해에만 대우건설에서 7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하였는데,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2위 현대건설에서도 6명이 사망했는데 역시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3위 GS건설은 사망 노동자 5명 중 3명이 하청노동자였고, 공동 4위인 롯데건설, 한신공영, 수성수산에서는 각각 4명의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했다. 특히 수성수산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 4명은 모두 이주노동자였다. 계속되는 위협의 외주화로 건설, 조선하청 노동자, 이주노동자 죽음이 지속하고 있다. 한국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위협의 외주화는 죽음의 외주화, 죽음의 이주화를 부르고 있다. 하청 노동자를, 이주노동자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

2020년 특별상을 받게 된 한국마사회는 2019년까지 노동자 7명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다. 지난해 11월 29일 고 문중원 경마기수가 한국마사회의 비리, 갑질 등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는 2005년 개장 이래 2019년까지 7명의 마필관리사(3명), 경마기수(4명)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간 7~8조 매출을 기록하는 공기업 한국마사회는 연이은 노동자의 자살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책임지려는 모습도 없다. 문중원 열사가 죽음으로 고발한 마사회의 적폐는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한국마사회에서 3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할 의무와 책임 있는 정부는 한국마사회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 한국마사회는 문중원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적폐비리의 온상인 공공기관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특별상은 노동부다. 2019년 한 해에만 104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영덕의 수산물 가공업체 지하 저장창고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은 질식으로, 경기도 양주 건축폐기물 공장에서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인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대전에서는 한국에 온 지 보름 만에 조형물에 깔려 사망한 이주노동자도 있었다. 92만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예전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으로 오지만 정작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죽고,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죽고, 화학물질에 질식해서 죽고, 농어촌에서 과로로 사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멈추려면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리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이들을 종속시켜 강제노동을 허용한다. 이주노동자가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껴도 스스로 일을 그만두거나 사업장을 바꿀 수 없게 한다. 이주노동자 죽음을 멈추고 싶다면 노동부는 하루빨리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 더불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고용을 제한해야 한다.

4·15 총선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긍정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과반 의석수를 안겨주었다. 야당을 방패 삼아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중대재해기업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개혁 입법을 미룰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생명존중 사회,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절호의 기회를 정부와 21대 국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 우리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해 더욱 힘차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싸울 것이다.

2020년 4월 27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유가족 발언 : 고 김태규 노동자 누나 김도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4월 10일 수원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 사망한 태규 누나 김도현입니다.

제 동생은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가장 높은 곳에서 일하였지만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안전대와 안전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미승인으로 사람이 타면 안 되는 엘리베이터의 문을 개방하여 운행한 살인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초기 태규가 술 먹고 스스로 실족사 한 것이라며 언론에 흘렸고 고용노동부는 사 측에 증거 은폐를 사실상 용인하며 개인의 잘못으로 몰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부검 결과 알코올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 행태에 갈기갈기 찢겨 난도질당해 눈 감는 그날까지 여태까지 겪은 일들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원지검은 회사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사와 노동자 둘 사이의 문제인데, 책임자인 기업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태규 잘못이란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공사장 추락사로 진실을 묻고 수사도 안 하고 끝내버리면 그만입니까? 이런 것이 정말 검찰의 역할입니까?

이 문제는 저희 태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몇 명에서 몇 백 명이 될지도 모르는 같은 죽음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함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기업이 내는 평균 벌금은 432만원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 회사 건물에 불이라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듭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람을 죽여도 책임이 없지만 사람이 기업을 처단하면 중죄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거지 같은 법이 아닌가. 내 동생을 죽인 회사들은 죄가 없지만 나는 죄인이 되는구나“

“재수 없게 이곳에서 죽어 준공 늦어지고 돈만 더 들어간다” 고 했던 원청사 에이씨엔 관계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태규를 죽음으로 내몬 이 기업이, 경기도에서 유망 기업으로 인증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태규를 죽게 만든 회사는 상도 받고 죄도 없답니다. 이 나라 정부가 누구의 편인지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이 죽음을 막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20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매년 2400명의 죽음의 행렬, 기업살인을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썩어빠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노동자 피 빨아먹는 고용노동부, 부유한 범죄자는 처벌하지 않고 가난하고 무고한 노동자에게만 혹독한 검찰과 재판부, 더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산재사망자 반으로 줄이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은 계속 죽어갑니다. 2022년이 아닌 지금부터 지켜주십시오. 기업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위험한 곳에서 목숨 값 저울질하며 부려먹고, 죽고 나면 가장 싼값으로 처리할 방법을 궁리합니다. 기업의 탈을 쓰고 범망 뒤에서 모든 죽음을 노동자 잘못으로 몰아가는 이 현실을 개탄하며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많은 산재사망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법과 제도 자체를 바꿔낼 수 있도록 제 나름의 사명을 갖고 길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 참고자료1 : 산재사망과 처벌현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성

1. 한국 산재사망의 심각성

1) 매년 2,400명 산재사망. 2001년 이후 경제적 손실 309조9174억원

- 2001년~2018년까지 정부 통계로만 1,646,102명이 산재. 산재사망은 42,632명에 달함. 동 기간 정부 통계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액은 309조9174억원임. 이는 2019년 정부 총예산 470조의 66%가 지난 18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임
- 한국 산재사망 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임.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함. 한국의 교통사고에 대비해서도 1.3배 높음
- 한국은 화물운수, 건설기계, 버스, 킥 서비스, 택배 등 다수의 위험업종 종사 노동자가 특수고용으로 250만 명의 산재가 통계에서 적용제외 되어있음.
- 2012년 노동부 산재통계 처리 규정 일방적 변경. <예방통계> 명목으로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고 발생 1년경과 사망’ 등 통계에서 제외하여 국내외로 발표되는 산재통계가 축소되는 착시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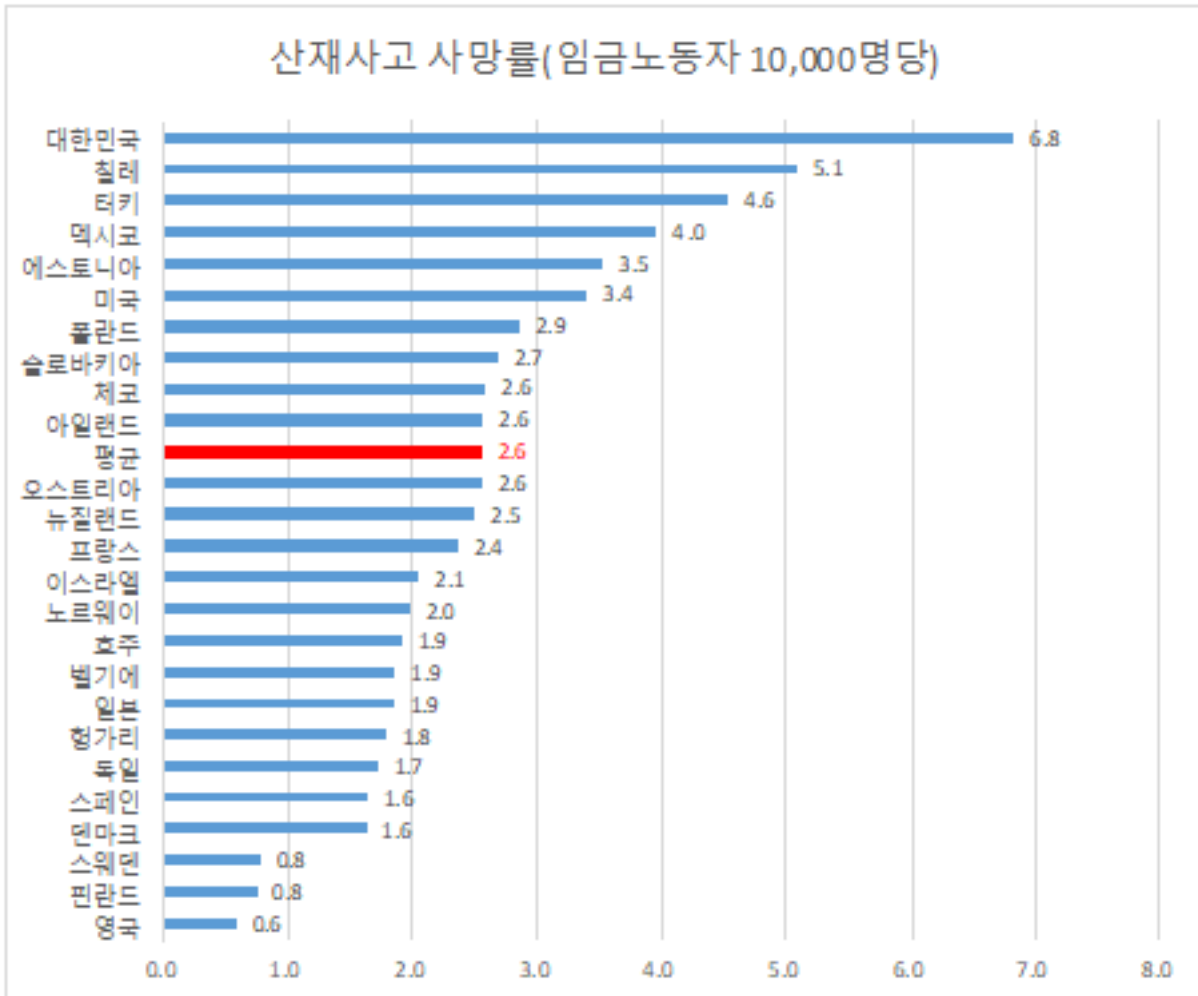
노동부 산재 통계 자료 취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년도	산재(명) ①	산재 사망(명)②	경제적 손실액 (단위, 억원)	기준변경 통계③	사망통계 차이④
2018	102,305	2,415	251,695	2,142	-273
2017	89,848	2,209	221,801	1,957	-252
2016	90,656	2,040	214,002	1,777	-263
2015	90,129	2,066	203,955	1,810	-256
2014	90,909	2,134	196,328	1,850	-284
2013	91,824	2,233	189,771	1,929	-304
2012	92,256	2,165	192,564	1,864	-301
2011	93,292	2,114	181,269	1,860	-254
2010	98,645	2,200	176,619	1,931	-269
2009	97,821	2,181	173,159	1,916	-265
2008	95,806	2,422	171,094	2,146	-276
2007	90,147	2,406	162,114	2,159	-247
2006	89,910	2,453	158,188	2,238	-215
2005	85,411	2,493	151,288	2,282	-211
2004	88,874	2,825	142,995	2,586	-239
2003	94,924	2,923	124,090	2,701	-222
2002	81,911	2,605	101,016	2,605	
2001	81,434	2,748	87,226	2,748	
합계	1,646,102	42,632	3,099,174	*노동부는 2002년 이전 통계 분류 없어 조정 못함	
평균	91,450	2,368	172,176		

- ① 산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
- ② 산재사망: 근로복지공단 산재사망 통계 (2012년 변경 전 통계 기준 적용)
- ③ 노동부 통계 변경 : 2012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에 10년 치 통계 변경 발표
- ④ 노동부 통계 변경 기준에 따른 산재사망 통계 차이

2) 여전한 OECD 산재사망 1위

- OECD 가입 국가 중에 산재사고 사망 만인률은 0.68로 여전히 1위임
- 이는 칠레, 터키, 멕시코 등 보다 높은 것이며 영국의 11배, 일본이나 독일의 5배에 달하는 비율임



※ 자료 출처 : ILOSTAT에서 재가공

2. 산재사망 처벌의 현황

※ 상세한 처벌 현황은 첨부자료3(30쪽) 참조

- 반복되는 산재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집중 제기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확산되었으나, 산재사망 처벌은 변화가 없음
-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기업의 최고 책임자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원청의 공장장등 책임자급은 무혐의나 집행유예만을 선고받고 있음

- 2015년 서울지하철의 외주화가 근본 원인이었던 강남역 스크린 도어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는 결국 사망한 노동자의 개인과실로 결론이 내려졌고, 산재은행을 위해 119를 돌려보냈던 충북 에버코스 지게차 사고도 살인죄로 기소되지 못함

업체명	재해 원인	재해 현황	처벌 수준
코리아2000	물류창고 화재	건설노동자 40명 사망	벌금 2천만원
이마트	냉동기 수리 중 질식	4명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 100만원
GS건설	폭발	4명 사망 20여명 중경상	GS건설 현장소장 벌금 1,500만원 법인 처벌 X 하청회사 벌금 200만원
아미코트	폭발	4명 사망, 9명 상해	대표이사 징역2년 집유3년 안전관리책임자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아미코트 법인 벌금 500만원
한라건설	침몰	12명 사망	현장소장 징역2년 석정건설 대표이사 징역1년4개월 한라건설 현장소장 집유2년 한라건설 벌금 500만원 석정건설 벌금 1천만원
삼성전자	불산 가스누출	1명 사망4, 4명 상해	유독물관리자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 벌금 300~700만원 협력업체 임직원 3명 벌금 400~ 700만원 STI서비스 벌금 1천만원 삼성전자는 사고 직접성 부정 무죄
현대제철	아르곤 가스누출	5명 사망	현대제철 벌금 5천만원 부사장 징역2년 집유3년
롯데건설	추락	1명 사망	롯데건설 벌금 700만원 하청업체 벌금 1천만원 롯데건설 임원 집행유예
서울시	수몰	7명 사망	원청 서울시 무죄 시공사 현장소장 금고2년, 집유3년
SK건설	붕괴	4명 사망	SK건설 현장소장 징역8개월, 집유2년 하청 현장소장 징역1년, 집유2년
한화케미칼	폭발	6명 사망, 1명 부상	한화케미칼 과장 금고1년, 집유2년 한화케미칼 대리 금고1년, 집유2년
에버코스	차량 충돌	1명 사망	지게차 운전자 금고10개월, 집유2년 현장지휘자 금고8개월, 집유2년 에버코스 벌금 700만원 에버코스 대표 벌금 700만원

업체명	재해 원인	재해 현황	처벌 수준
코레일	스크린 도어(성수역)	1명 사망	과실치사상 무혐의, 하청과태료 30만원
	스크린 도어(독산역)	1명 사망	하청벌금 100만원, 코레일 처벌 X
현대삼호중공업	철판 전도	1명 사망	교통사고 처리
	추락	1명 사망	대표이사 무죄 조선본부장 벌금 800만원
현대미포조선	추락	1명 사망	대표이사 징역4개월 집유1년
현대중공업	화재	1명 사망	대표이사 무죄, 조선본부장 벌금 800만원
	에어호스에 목졸림	1명 사망	자살 처리
	추락	1명 사망	대표이사 무죄, 조선본부장 벌금 800만원
	낙하물	1명 사망	해양본부장 벌금 700만원
	압사	1명 사망	벌금 150만원
	추락	1명 사망	조선사업 대표 벌금 300만원
	압사	1명 사망	검찰 무혐의 처분
	철판 전도	1명 사망	약식 벌금 200만원
	철판 전도	1명 사망	검찰 무혐의 처분
	야간 실족	1명 사망	약식 벌금 500만원
	추락	1명 사망	검찰 무혐의 처분
	추락	1명 사망	약식 벌금 300만원

3. 외국의 기업살인법 제정 현황

- 캐나다 호주는 2003년과 2004년에 영국은 2008년에 기업 살인법이 제정 됨
- 영국은 기업 살인법으로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고 있음. 기업 살인법 적용으로 1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6억 9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이후 기업 살인법 적용하여 처벌한 기업이 10여건에 이르고, 법 제정은 영국 산재사망 감소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임

해외의 기업처벌법 현황

국가	제정년도	법 명칭	주요 내용
캐나다	2003	“단체의 형사책임에 대한 형법 개정안”	산재사망, 재난 사고 포괄.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형사 처벌
호주 준주	2003	“산업 살인법”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기업의 최고 책임자 형사 처벌 (수상도 기소 대상)
영국	2007	“기업 살인법” “기업 과실치사법”	산재사망, 재난사고 포괄, 사망사고 유발 기업 매출액 기준 벌금 부과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 대한민국은 한 해 2천4백여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나라.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1위입니다.
- 2018년 김용균, 2016년 구의역 김군, 2017년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충돌(하청노동자 6명 사망), 현대제철(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2017년,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등 산재사망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502명 사망, 937명 부상), 대구 지하철 참사(2003년 192명 사망), 기습기 살균제 참사(1400명 이상 사망), 세월호 침몰(2014년 295명 사망, 9명 실종). 사회적으로도 많은 시민, 학생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갖기 위해 안전을 무시, 기업을 감독해야 할 행정당국의 방관과 묵인, 그리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수많은 산업재해와 대형 재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도록 만듭니다.
- 특히 ‘세월호 참사’는 규제되지 않은 자본과 대안도 없이 공적인 안전 기능을 해체하기 시작한 국가의 무능·무책임이 낳은 위험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픈 교훈은 생명과 안전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처벌하며,
 - ▲기업 자체를 처벌하고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현행법상 기업을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이 법에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법의 주된 취지입니다.

2)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 일반 형법에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없어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유인이 매우 약합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이사와 주주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 법으로 기업이 처벌될 경우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했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전년도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은 책임이 없나요?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나요?

-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위 장소에 대한 인·허가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을 사상케 한 때 그 공무원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엄격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면 많은 사고가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자료2 : 한국마사회 안전보건 실태1)

1. 재해 실태

2005년 이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장에서 자결한 기수와 말 관리사	
-	2005년 이명희(26) 기수(유서: “고통도 없고 편히 숨 쉴 곳엘 가기 위해”)
-	2010년 3월 박진희(28) 기수(유서: “부산경마장 기수들이 최고 힘들고 불쌍해, 도대체 부산에서 몇 번의 자살 시도냐.”)
-	2011년 11월 박용석 말관리사 (유서 : 과도한 업무 부담 호소)
-	2017년 5월 박경근 말관리사 (유서 : × 같은 마사회)
-	2017년 8월 이현준 말관리사
-	2019년 7월 조성곤 기수
-	2019년 12월 문중원 기수

- 3,404회. 고 문중원 기수가 남긴 15년간의 통산전적 기록이다. 기수는 살아있는 말을 타고 일정한 거리(경주로)를 달려, 가장 빨리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경쟁한다. 말의 경우는 체격이 크고, 보다 예민하고, 행동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어 더 높은 재해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2) 기수는 일반 노동자에 비해 상상을 초월한 재해율을 보이지만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 벗어난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2018년 기수 재해율은 72.7%로 전업종 재해율 0.54%에 비해 무려 135배에 달한다. 같은 업종인 말 관리사의 재해율(2018년 18.6%3))과 비교해 보아도 4배 가까이 높아 기수는 상시적으로 높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재해율 비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 업 종	재해자수	91,824	90,909	90,129	90,656	89,848	89,848	연간자료 없음*
	노동자수	15,449,228	17,062,308	17,968,931	18,431,716	18,560,142	19,073,438	
	재해율	0.59	0.53	0.5	0.49	0.48	0.54	
기 수	재해자수**	148	136	115	100	83	88	77
	기수인원	133	125	134	125	124	121	118
	재해율	111.3	108.8	85.8	80.0	66.9	72.7	65.3
관 리 사	재해자수	106	152	109	104	113	162	161
	노동자수	814	824	839	852	842	871	870
	재해율	12.86	18.12	12.79	12.35	12.96	18.60	18.50

* 19년 산업재해 발생 통계는 3분기까지 발표되었음. 재해자 수 80,846명, 재해율 0.44%(전년 동기 대비 0.04%p 증가)4)

** 기수의 재해 관련 보험처리 건수(한국마사회(2020))

1) 2020년 2월 5일故문중원 시민대책위 <고 문중원 기수 죽음과 관련한 마사회 구조와 실태조사 보고서> 일부 발췌

2. 재해 은폐

- 위의 재해 실태에서 말관리사의 산재보상재해만 하더라도 2017년 113건, 2018년 162건, 2019년 161건에 달하는데도 마사회의 산업재해 신고 현황은 18건, 17건, 23건으로 산업재해 미보고율이 84% 이상으로 나타났다. 말관리사의 재해율이 높다고 하지만 마사회 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보고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4>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신고 현황(마사회 전 사업장 기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말관리사 산재보상재해	113	162	161
산업재해 신고 현황	18	17	23
미보고율(%)	84.1%	89.5%	85.7%

-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015~2017년까지 3년간 산재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서 위반횟수 50건으로 1위에 올랐고,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도 위반횟수 12건으로 3위에 올랐다. 재해의 은폐는 공식적인 재해율을 낮춰 재해예방을 위한 장애물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을 피해가기 위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 산재의 은폐는 미보고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마사대부 평가에 산재율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산재 신청을 막거나 분위기상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기수의 경우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고의 대상도 아니며, 민간재해보험을 받으려면 기승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존재해 1~2주 정도의 부상은 재해보험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3. 재해의 원인 : 보장되지 않은 기승거부권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중지권(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개인사업자’ 신분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 하며, 동시에 조교사와의 계약 및 지시가 없으면 말을 탈 수 없는 기수들에게는 이런 거부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고용 지위상의 불리함은 기수들이 조교사나 마주의 부정 지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도 하지만, 안전보건상 문제를 일으키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기수들은 보통 본인이나 말의 상태가 경주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도 마주나 조교사가 경주 참여를 강요하면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것이 종종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 조교사나 마주와의 관계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태풍이나 우천 등 경주하기 위험한 상황에서 경

마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수들은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없다. 이에 따라 기수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경주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경마 경주를 지휘하고 시행하는 마사회에서는 한 차례라도 경기를 더 해서 수익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런 상황은 자주 기수의 안전을 위협한다.

- 문중원 기수의 사망 이후, 시행한 기수 설문조사에서도 설문 참여 기수의 60%가 조교사로부터 부담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것이 ‘다리 안 좋은 말을 출전시키는 조교사와 수의사의 문제’였다. 이는 당연히 경주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문에, 경마 시행규정에서도 질병이 있거나 악벽이 있는 말은 경주 제외, 출발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결정할 때 기수나 말관리사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 기수의 기승 거부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다 보니, 말 상태에 따라 가장 큰 안전상의 부담을 지게 되고, 말과 함께 경기를 진행하는 당사자인 기수에게 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기수가 속한 마방의 말을 반드시 조교하거나 경주에 데리고 나가지 않는 현재의 제도 자체가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다.

4. 위험을 키우는 구조

1) 기승 거부권이 없는 고용계약구조

- 기수들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상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승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조교사와 기수 사이의 종속적인 계약 관계와 △마사회의 경마 시행 결정 과정에 기수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먼저, 조교사와의 관계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기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기수들에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표준 기승 계약서에 경주 기승 및 조교 보조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삽입해야 한다. 더불어, 이런 기승 거부권이 의미를 가지려면, 부담한 지시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 금지 조항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교사가 기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불이익 처분은 기승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기수에게 기승 기회를 주는 것이 조교사 재량으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기수들 사이에 기승 횟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는 조교사가 특정 기수에게 어떤 이유로 기승 기회를 제한하는지 드러나지 않게 한다. 따라서 마방의 계약 기수에게는 그 마방의 출전 중 정해진 비율 이상 기승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한다든지, 모든 기수가 연간 출전해야 하는 최소 경기 수를 정하고 이를 마사회 각 경마공원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주 제외, 출발 제외, 마체 검사, 조교 상태 심사 조항이 실효를 가질 수 있도록 경마 시행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2) 치료받을 권리 배제

- 개인사업자인 기수는 재해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다. 본인이 낸 보험금으로 마사회에서 단체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재해를 입었을 때 일정한 금액의 최저 생계비와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

이다.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여 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장받는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 기수의 재해는 대부분 기승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말의 상태와 경마장 노면의 상태, 악천후 등을 이유로 기승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구조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본인이 져야 한다. 말을 선택할 수 없는 하위권 기수에게 재해가 더 빈번히 발생하고 생계를 위해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고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다.
- 2019년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지게차, 덤프트럭 특수형태고용종사자도 확대 적용되었다. 기수들의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재해위험이 현저히 높은 직군으로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기승 계약에 재해보험에 대한 부담을 조교사와 공동 부담하고, 치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의 재계약 의무 등의 내용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있으나마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 한국 말 산업은 한국마사회를 주축으로 말을 공급하는 농장으로부터, 경마를 위한 마주, 조교사, 말관리사, 기수 등 여러 직종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기도 하여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조건이다.²⁾ 경마산업으로만 봐도 마사회, 마주, 조교사, 말관리사, 기수는 서로 고용관계로 맺어져 있지 않아 기존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 이럴 때 포괄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운영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마 시행체인 마사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해 예방 및 일하는 사람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할 권한과 경마 시설 환경 개선의 책임이 마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경마 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아우르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 동안 경마산업 안전보건체계와 관련된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였다.³⁾
-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중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안전근로협의체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이하 “원청업체”라 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시 당해 사업장 내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이하 “하청업체”라 함)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로서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었던 안전보건을 이제는 원청이자 공공기관인 마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안전보건은 고용구조와 시스템, 시설과 관리의 문제이므로 개인에게 전가되어서는 답이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근로협의체에 말산업 전체의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 보장하고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닌 적극적인 결정기구로 활용해야 한다.

2) 경마산업 재해 예방 및 감축 증장기 전략보고서(2014.09. 원진 녹색병원), 경마산업 종사자 안전관리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연구(2019.02.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

3) 위와 동일

□ 참고자료3 :기업처벌 현황(중대재해사고 책임자 처벌사례)

I. 산업재해

1. 건설노동자 김태규 사망사건 (2019년 4월 10일)⁴⁾

피의자	죄명 (적용법조)	서부경찰서 송치의견	수원지검 기소결정
제갈식 (ACN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승강기안전관리법	불기소 (혐의 없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법인 (ACN / 발주처)			
김상욱 (은하종합건설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관리법	기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법인 (은하종합건설 / 시공사)			-불구속기소(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승강기안전관리법) -혐의없음(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이기창 (은하종합건설 이사)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문혁민 (은하종합건설 차장)			-불구속기소(업무상과실치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불기소(혐의 없음/산업안전보건법)
김현기 (은하종합건설 현장소장)			-불구속기소(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관리법) -혐의없음(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김진복 (계향인력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횡령 산업안전보건법	불기소 (혐의 없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진현 (계향인력 대표의 형)	횡령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균희 (이조엔지니어링) 승강기 제조	승강기안전관리법	기소	-공개 불가

- 2019. 4. 수원의 아파트형 공장 건설 현장 5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함. 건설폐기물을 모으는 작업을 했던 김태규 노동자는 수시로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안전검사를 마치지 않은 승강기를 이용해야 했음

2.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2018년 12월 10일)⁵⁾

- 2018. 12.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협착,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2인1조 근무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설비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점검작업 및 낙탄제거 작업을 지

4) 2020. 4.16. 20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내부토론회 오민애 변호사 토론문 49쪽

5) 앞 자료 48쪽

시하여 위험한 상태에서 계속 일하도록 하면서도 컨베이어벨트와 로울러가 맞물려 돌아가는 설비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함

- 유족과 시민들은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을 살인(예비적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본부장,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을 포함한 직원 11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2020. 4. 현재 검찰 처분 이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의견

3.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건 (2017년 5월 1일, 6명 하청노동자 사망)⁶⁾

- 2017년 5월 1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의 타워크레인 충돌사고로 6명 사망, 25명 상해, 삼성중공업 임직원 및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대표, 직원 총 15명 기소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삼성중공업에 벌금 300만원 선고(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무죄. 안전보건협약체 운영의무 위반 혐의만 인정), 신호수 2명에 금고1년6월 집행유예3년, 거제조선소장 벌금 300만원, 지브크레인 운전수 등 담당 근로자 벌금 300~700만원, 담당 과장 무죄(항소심에서 벌금700만원), 하청업체 대표 및 삼성중공업 부장 무죄(항소심에서 금고10월, 금고6월 각 집행유예)

4.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 (2016년 6월 28일, 5명 하청노동자 전신화상, 2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원청회사	고려아연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5,000만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총책임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금고 8월, 집행유예(2년)
	온산제련소 공장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벌금 1,500만원
	온산제련소 배소2팀 대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온산제련소 배소2팀 팀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금고 8월, 집행유예(2년)
	온산제련소 정비2팀 대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온산제련소 정비2팀 팀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벌금 1,000만원
하청회사	한림이엔지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
	한림이엔지 주식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1,000만원
	현장소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벌금 700만원
	현장 안전관리 직원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벌금 500만원

- 2016년 6월28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 제조설비 보수공사 도중 황산 3만 9000리터 누출. 황산 누출은 배관에 든 황산(농도 95%)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지시

6) 앞 자료 47쪽

5.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 (2016년 2월, 6명 파견노동자 실명)

	직책	죄명	1심	2심
원청회사	삼성전자			
	LG전자			
3차 하청업체 (사용 사업주)	YN테크 석모씨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80시간 사회봉사	
	BK테크 안모씨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80시간 사회봉사	
	덕용ENG 조모씨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검찰 항소, 항소 기각
인력파견 업체 (파견 사업주)	누리잡 (YN테크에 파견) 이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드림아웃소싱 (BK테크에 파견) 원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벌금 600만원	
	플랜에이치알 (덕용ENG에 파견) 이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벌금 400만원	
	대성컴퍼니 갈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벌금 200만원	
	서울솔루션 이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 2016년 2월 삼성전자·LG전자 스마트폰 부품 제조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메틸알코올(메탄올) 중독 실명 사건이 알려졌고, 심지어 노동부 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도 발생. 인천, 부천 공단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20대 청년노동자 5명이 실명위기. 2016년 10월 초 피해 노동자 2명이 추가 확인

6.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 (2015년 8월 29일, 28세 하청노동자 사망)

	직책	죄명	1심
원청회사	서울메트로 전 사장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
	서울메트로 지하철 강남역 부역장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서울메트로 지하철 CM센터장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
하청회사	유진메트로컴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1천만원
	유진메트로컴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 배임	벌금 2천만원

	직책	죄명	1심
하청회사	유진메트로컴 기술본부장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1천만원
	유진메트로컴 광고사업본부 사장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벌금 1천만원
	유진메트로컴 신사업개발부 전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횡령)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횡령)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지하철 역사 관리와 직원 안전 확보를 소홀히 해 2015년 8월 29일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선로 안쪽에서 혼자 작업하던 조모(28·사망 당시)씨가 진입하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

7. 청주 에버코스 지게차 운전자 사망 사고 (2015년 7월 29일, 30대 노동자 사망)

	직책	죄명	1심
원청회사	에버코스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7백만원
	에버코스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7백만원
	에버코스 수주물류팀 소속 지게차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원청회사	에버코스 구매팀장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에버코스 상무이사, 공장장 (실질적인 안전관리 책임자)	에버코스 구매팀장과 공동범행 업무상과실치사	
	에버코스 안전관리업무 실무자 (안전문제 지적 받아옴)		
	에버코스 구매과장 (119신고 취소)		
에버코스 수주물류팀 팀장 (피해자를 승합차에 싣음)			

- 2015. 7. 29. LG생활건강의 하청업체로 화장품을 생산하는 청주의 에버코스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5분간 끌려가는 사고를 당한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사측의 산재 은폐와 관계 기관인 고용노동부, 경찰의 침묵으로 그냥 평범한 사고로 묻힐 뻔 했으나, 8. 18. JTBC “뉴스룸”에서 현장 CCTV를 공개하고 “사측이 출동한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 이송을 기다리며 방치하는 사이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실” 을 보도하면서 알려짐

8. 광주 남영전구 공장 집단 수은중독 사건 (2015년 4월, 21명 급성 수은중독)

	직책	죄명	1심	2심/최종심
원청회사	남영전구 주식회사 법인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억	벌금 2억
	남영전구 대표이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검사 항소 기각
	남영전구 물류센터 이전 총괄 책임자(부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검사 항소 기각
	남영전구 환경관리인 (차장)-공사현장 관리감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검사 항소 기각
	남영전구 주식회사 법인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억	벌금 2억
	남영전구 대표이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검사 항소 기각
	남영전구 물류센터 이전 총괄 책임자(부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검사 항소 기각
	남영전구 환경관리인 (차장)-공사현장 관리감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검사 항소 기각
	남영전구 모그룹 기술관리실 부장-안전문제 기술검토 차 파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 폐기물관리법 위반(무죄)	검사 항소 기각
하청회사	하청업체 실운영자, 현장책임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 2015. 3. 23.부터 2015. 4. 7.까지 진행된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제조시설 철거 작업에 투입된 철거업체의 하청노동자들이 집단 수은중독현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21명이 집단으로 급성 수은중독. 14명이 산업제해 인정을 요구. 근로복

지공단 광산지사는 그중 12명의 신청을 승인. 2명은 사업자로 분류 돼 산재 불승인 처분

9. 한화 케미칼 울산공장 폭발 사망 사건 (2015년 7월 3일, 하청노동자 6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항소
원청회사	한화케미칼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1,500백만원	
	한화케미칼 울산1,2,3공장 공장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벌금 5백만원 산업안전사고예방강 의 40시간 수강	
	한화케미칼 울산1,2,3공장 생산담당 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1,500백만원	
원청회사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PVC생산팀 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8월,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 의 40시간 수강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PVC생산팀 과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80시간 수강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PVC생산팀 대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80시간 수강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공무2팀 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1,500백만원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공무2팀 대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 의 40시간 수강	
하청회사	하청업체 대표 - 공해방지시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 의 40시간 수강	
	하청업체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 의 40시간 수강	

- 2015. 7. 3. 오전 9시16분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안 폐수처리장의 폐수저장조에서 용접 작업 중 폭발 사고. 28살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하청업체 노동자 6명 사망

10.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2013년 3월 14일, 사망 6명, 부상 11명)

	직책	죄명	항소심	최종심
원청회사	대림산업(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불이행, 보건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산업안전보건 법은 무죄	(파기환송) 벌금 3,500만원
	대림산업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불이행, 보건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산업안전보건 법은 무죄	(파기환송) 징역 8월
	노동자들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8월-1년
하청회사	유한기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000만원
	유한기술 제작사업본부장,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안전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
	유한기술 안전팀 과장(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천만 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2.19. 선고 2013노2217 판결)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기업의 이윤 획득과 안전을 도외시한 효율만을 추구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보수작업을 강행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안전감시·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 이라고 밝혔다. 이 구조적인 원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여수대림공장 공장장의 양형(징역 8월)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유로서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원인과 유사한 원인, 즉 ‘이윤 획득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기업문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 그리고 미흡한 안전관리 제도에서 비롯된 안전 의식의 부재’ 는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유죄가 인정된 공장의 해당 작업허가 담당자와 현장 작업감시자 그리고 현장 작업감독자에 대해서 양형을 할 때에는 양형 참작에 있어 이들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로 언급되었다.

11.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 질식사고 (2013년 5월, 5명 사망)

피고인	직책	죄명	1심	최종심
원청회사	현대제철 주식회사(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건조치위반, 도급사업시 안전조치위반)		벌금 5,000만원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무혐의 (검찰)
	생산본부장(부사장/안전보 건관리책임자, 중대재해예방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건조치위반, 도급사업시 안전조치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피고인	직책	죄명	1심	최종심
원청회사	정비본부 제강기계팀 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6월) 사회봉사160시간

- 경찰은 사고원인을 정비본부 제강기계팀 팀장 등이 전로 내화벽돌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전로에 아르곤 가스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아르곤 가스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았다. 산업보건법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산소 농도를 측정후 환기시설을 점검하는 등 ‘밀폐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데 업체 측에서 전로 내부를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과실도 확인되었다.

12. 노량진 지하철 공사장 수몰 사고 (2013년 7월 15일, 사망 7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업무상과실치사죄	무죄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금고 2년(집유 3년)
	책임감리관 이모(49)씨	업무상과실치사죄	금고 1년6월(집유 2년)
하청회사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2년
	노동자	업무상과실치사죄	금고 2년(집유 3년)

- 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에게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3. 부산항대교 연결도로 임시시설 붕괴사고 (2013년 12월 19일, 사망 4명)

	직책	죄명	1심	2심
원청회사	SK건설 현장소장 신모(49)씨	임시 시설물의 붕괴 위험을 보고받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징역 8개월(법정구속)	징역 8개월(집유 2년)
하청회사	하도급업체 삼정 소속 현장소장 이모(53)씨	같은 혐의	징역 1년	징역 1년(집유 2년)
	감리회사 길평 소속 보조감리원 오모(44)씨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14. LG화학 청주공장 다이옥산 폭발사고 (2012년 8월, 사망 8명, 부상 3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무혐의(검찰)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2년)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1년의 집행유예(2년) 금고 6월의 집행유예(1년)

15. 국립현대미술관 (2012년 8월 13일, 사망 4명, 부상 24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벌금 1,500만원
	안전과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300만원 또는 기소유예
하청회사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00~200만원
	현장소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00~300만원

16.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사건 (2008년 1월 7일, 40명 사망, 10명 부상)

피고인	직책	죄명 ⁷⁾	최종심
원청회사	(주)코리아2000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2천만원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벌금 2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집행유예 2년(징역 10월), 벌금
발주자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집행유예 2년(징역 8월), 벌금 등

- (주)코리아2000 냉동설비공사는 ‘코리아냉동(발주처)-코리아2000(원청) - 유성엔지니어링(하청)-한우동신.HH코리아(재하청)-팀장(오야지)-건설일용근로자’ 구조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청업체인 (주)코리아2000은 하청업체의 인력운용 현황 등에 대해 전혀 감시·감독을 하지 않았다. 유성냉동설비(34명), 한우전기설비(17명), 아토테크에어컨설비 및 청소업체 직원(6명) 등이 공사를 하청받아 여러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공사 인력을 배치했다. 결국 유증기가 가득 찬 위험한 공사현장에 비숙련 일용직 노동자를 투입했으며 공사 책임자는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셈이다.

7)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조항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58조: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가스 등이 산재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풍 및 환기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 등에 의한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59조: 사업주는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작업을 하는 때는 폭발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호스 및 배관 점검 등 안전사항을 준수하도록 못박고 있다.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266조: 사업주가 가연성가스, 화학류 등 가연성물질이 존재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불꽃,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나 기계,기구, 공구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267조: 유류 등이 들어있는 배관이나 용기 등의 용접을 제한
-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258조: 통풍 등이 불충분한 곳에서의 용접을 제한

17. GS리테일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 (2008년 12월 5일, 6명 사망, 7명 부상)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무혐의(검찰)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2년)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1년의 집행유예(2년) 금고 6월의 집행유예(1년)

18. 이천시 GS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 사건 (2005년 10월 6일, 사망 9명, 부상 5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700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500만원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 벌금200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1년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200만원

II. 일반 공중 재해

1.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295명 사망, 9명 실종)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차 진행되지 않으면서, 총괄 책임인 해수부 장관, 청와대 핵심 책임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임

가. 망 유병언 일가에 대한 판결

이름	직책	죄명	1심 (2014.11.5.)	2심 (2015.5.22.)	3심 (2015.09.24.)
유대균	유병언의 장남. 청해진해운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최대 주주	횡령 및 배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약 35억원 등 계열사들로부터 약 68억원 횡령)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2년
유병일	유병언의 친형	업무상 횡령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3500만원 수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병언 전 회장 사망.
- 유대균 감형이유: 전과가 없고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
-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상을 유병언일가에게 물겠다며 1심에서 재산추징을 했으나, 2심과 3

심에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판결에서 추징은 제외. 이에 유대균은 검찰이 사전에 추징한 40억을 돌려달라며 9월말 민사소송 제기. 법조계에서는 유대균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9월말 유대균을 상대로 431억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2015. 10.16일 언론 보도)

나. 청해진해운 임원 및 직원에 대한 판결

직책	죄명	1심 (2014.11.20.)	2심 (2015.5.12.)
대표이사(김한식)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	징역 7년, 벌금 200만원
상무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5년, 벌금 200만원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징역 6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물류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4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물류팀차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2년 6월,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세월호 원래선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 기각

- 감형이유: 재판부는 “횡령·배임액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인천지법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측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며 “형평성을 고려해 횡령·배임에 대한 형을 줄였다.” 고 설명
- 상고심 일정 아직 시작되지 않음

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재판

-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등 선원 15명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1심 재판부 기관장 살인죄 인정, 선장 살인죄 무죄, 유기치사로 징역 36년 선고
- 2심 재판부 선장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선고, 기관장 살인죄 무죄

라. 민간 잠수사 사망 관련

-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1명 사망
- 해경이 선임 민간 잠수사 공0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발
-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마. 세월호 참사 관련 공무원 처벌

* 자료는 유성엽 의원실 / 미디어 오늘 보도 인용자료임

○ 해양수산부 처분 결과

- 세월호 승선을 인가해 준 공무원 4명중 소청심사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징계를 정

직에서 감봉으로 감경

처분대상자 (당시 인천청 직급)	비위유형 (사유구체)	감사원 처분요구	징계위원회 결정	최종 징계결과
박OO(주무관)	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중선) 최종 인가 부당처리 -2012.8.14. 청해진해운의 선박도입 지연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가기한을 연장 승인 -2013.3.14. 사업계획변경시 2011년도 조건부 인가 당시 자료를 근거로 계획변경을 검토하여 운송수입률이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인가	정직	정직2월 (2015.3.6)	정직2월(2015.3.13) → 감봉3월 로 감경 (소청심사)
이OO(행정사무관)		정직	정직1월 (2015.3.6)	정직1월(2015.3.13) →소청심사 안함
김OO(선원해사안전과장)		정직	정직1월 (2015.4.10)	정직1월(2015.4.17) → 감봉2월 로 감경 (소청심사)
김OO(청장, 현 국토부)		정직	감봉3월 (2015.4.10)	감봉3월(2015.4.24) → 감봉1월 로 감경 (소청심사)

○ 한국선급 처분 결과

- 세월호 복원성, 선령연장, 건조검사를 담당했던 검사원들에게 인사규정의 감경 사유를 들어 감봉 3개월, 경고의 경징계. 당초 정직과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가 감경

○ 한국 해운조합

-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리자에 대해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미루다가 2015년 7월7일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될 때까지 징계하지 않음
- 심지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중 일부가 아무런 징계 없이 선박안전 기술공단의 운항 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음
-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총 15명인데, 이중 10명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에 합격. 이중 결격사유로 미임용 2명, 임용되었다가 1심 재판결과로 임용취소등을 제외하고 5명은 운항관리자로 현재 근무 중임

처분대상자	지적내용	감사원 처분요구	최종결과 (처분날짜)	변동이유 (감경내용)
이OO 팀장 책임검사원	경사시험 결과서 및 복원성 계산서 승인업무 부당처리	정직	감봉3월 (2014.11.11)	포상감경 (정직1개월→감봉3개월)
조OO 선임 수석검사원	선령 연장검사 업무 태만	부지정	경고 (2014.11.11.)	포상감경 (견책→경고)
전OO 선임검사원	세월호 별도건조검사 업무태만	정직	감봉3월 (2014.11.11.)	포상감경 (정직1개월→감봉3개월)

처분대상자	지적내용	감사원 처분요구	최종결과(처분날짜)
전OO 주임	세월호 차량 및 화물적재초과 미확인, 고박상태 부실점검	징계	2015.7.7. 면직 (여객선 안전운항관리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운항관리 직제와 정원 폐지)

○ 해경 간부와 구조업체 언딘의 유착관련

- 사고 직후 인근에 있던 바지선이 아니라 <언딘>의 바지선이 도착할 때 까지 기다려 구조작업 지연
- 해경간부와 언딘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해경간부 박 O 총경과 OO 경감을 재판에 회부
- 관할 법원의 문제로 1년 이상 심리조차 열리지 않음

2. 성수대교 붕괴 (1994년 10월 21일, 32명 사망, 1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동아건설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무죄	금고 2년	금고 2년
서울시 동부건설 사업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금고 2년 집행유예 4년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3.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6월 29일, 502명 사망, 6명 실종, 93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삼풍그룹,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징역 10년 6월 (7년6월 + 3년)	징역 7년 6월 (업무상횡령 무죄로 3년 감형)	상고 기각
삼풍백화점 사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뇌물공여	징역 7년	향소 기각	-
삼풍백화점 시설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 뇌물공여	금고 2년	금고 1년	-
서초구청장 (이충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징역 3년 추징금 13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만원
서초구청장 (황철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	징역 2년 6월 추징금 12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만원

- 삼풍백화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붕괴의 조짐이 있었으나 삼풍백화점 경영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붕괴 직전까지도 고객과 종업원들의 안전보다는 영업손실만을 걱정하다 자신들만 대피했다. 그러나 이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너무 미약했다. 애초에 이준 회장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붕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의도했다는 증거 없이는 법적 처벌이 어려웠다. 이준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5년 이하의 금고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구속되었으며 뒤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 추가되어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다만, 기업이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처럼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처벌된 사례는 사실 매우 이례적이었다.

4. 대구 지하철 화재 (2003년 2월 18일, 192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대구지하철공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1,000만원	-	-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인멸	징역 3년	징역 1년6월	무죄
대구지하철공사 시설부장	증거인멸	무죄	-	-
1079호 기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4년	금고 4년	상고기각
1080호 기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5년	금고 4년	상고기각
운전사령실 사령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3~4년		상고기각

- 대구지하철 사고는 기관사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기관사 및 관제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아 4-5년의 금고형을 받았다.
- 1인승무제 아래서 기관사가 혼자 위급상황 대처, 승객대피, 사령교신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나 비상유도등·피난로·소화설비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피가 어려웠던 점은 대구지하철공사의 책임이라 볼 수 있지만, 결국 회사의 책임자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5.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사고 (2005년 10월 3일, 11명 사망, 145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국제문화진흥협회 회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뇌물공여	징역 1년	원심 양형 유지	상고를 모두 기각
국제문화진흥협회 실무부회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2년6월		
상주시 행정지원 국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집유 2년)		
새마을 과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집유 2년)		
새마을과 6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뇌물수수	징역 10월(집유 2년)		
당시 상주시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6월(집유 2년)		
MBC PD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집유 2년)		
경호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2년	향소포기	
민족문화교류협회 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집유 2년)	향소포기	향소포기

6.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2007년 2월 11일, 10명 사망, 1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출입국사무소 경비계장	공문서 위조	징역 1년	항소
출입국사무소 7급 직원	공문서 위조	징역 1년	항소
출입국사무소 관리과장(사무소장 직무대행) 사무관	소방훈련 일지 허위 작성	징역 10월(집유 2년)	항소
경비과장인 사무관	허위 공문서	징역 8월(집유 2년)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금강의 경비원		금고 1년(집유 2년)	
관리과 8급 직원		벌금 800만 원	

7.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2013년 7월 18일, 5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2013.12.23.)	2심 (대전고등법원 2014노177)
유스호스텔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항소기각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징역 6월	
유스호스텔 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항소기각
코오롱트래블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해병대캠프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6월	항소기각
캠프교육팀 본부장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6월	금고 2년
교관 A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2년	금고 2년 6월
교관 B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4월	항소기각

8.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2014년 2월 17일, 10명 사망, 194명 부상)

피고인	직책	죄명	1심 (2014.9.5.)	2심 (2015.4.2.)	3심 (2015.7.9.)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업본부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2년 4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총 지배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포기	
	시설팀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설계감리	공사설계감리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설계·감리 부실)	금고 2년 6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건축구조 기술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대여 등)	금고 2년 6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상고포기

피고인	직책	죄명	1심 (2014.9.5.)	2심 (2015.4.2.)	3심 (2015.7.9.)
시공 (원청) S종합건설	대표이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받음,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허위 작성 등)	(무죄)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하도급업체 부실자재 사용 방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업 등록증 대여받음)	징역 2년 4월	징역 1년 6월	상고포기
시공 (하청) A개발	A개발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상 (지붕에 패널 부적정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 건설업)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시공 (하청) E강재	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	금고 3년, 징역 3월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전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 자재 구매 지시)	금고 2년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영업부 상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무리한 공기로 계약 수주, 부실시공 방치)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재부 과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 자재 구매 공급)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생산부 차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품질관리절차 미이행)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C강재 재하도급 업자	시공업자	업무상 과실치사상(고강도 무수출 모르타르 미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 시공)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향소포기	

- 검찰은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마우나오션리조트 대표와 코오롱건설 차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단체투숙객 유치를 위해,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체육관 신축을 서둘렀고, 사고의 근본원인이 이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았다. 기소는 총 14명과 법인 1곳이 되었다. 구속기소는 체육관 관리업체 임직원 2명 및 설계·시공·감리 담당자 4명 등 총 6명이었고, 불구속기소는 9명(법인 1곳 포함), 약식기소는 6명(법인 1곳 포함)이었다. 건축물 신축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빠졌다.
- 한국 원청-하청업체 구조상 하청업체에서 원청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에도 원청의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를 탓하지 않고 그 요구를 따른 하청업체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현실이다.

9. 고양 시의버스터미널 화재 사고 (2014년 5월 26일, 9명 사망, 115명 부상)

업체	직책	죄명	검찰 기소	1심 (2015.1.30.)	2심 (2016.3.9.)
공사발주업체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4년	(무죄)	(무죄)
	직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소방시설공사법위반	금고 4년	(무죄)	(무죄)
	법인	소방시설공사법위반			
자산관리업체 (쿠시먼)	간부			(무죄)	(무죄)
	직원			(무죄)	(무죄)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6월	징역 1년
	방재주임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6월	징역 1년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소방시설법		징역 2년6월	징역 1년, 벌금 100만원
	용접작업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6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배관 작업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6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공사 수급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2년6월	
	직원A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	
	직원B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집유 2년)	

- 검찰은 공사발주업체인 CJ푸드빌 직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2014고단 1934)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이들은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의정부지법 형사2부(은택 부장검사)는 씨제이푸드빌과 쿠시먼 직원 4명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 공사 직접 관여, 안전조치에서 구체적 주의 의무 미발생이라고 설명했다.

10. 장성요양병원 화재 (2014년 5월 28일, 21명 사망, 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014.11.21.)	2심 (2015.6.18.)
이사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징역 5년 4개월, 벌금 100만원	징역 3년, 벌금 100만원
행정원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2년 6개월, 보석 기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관리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감형이유: 재판부는 이사장의 화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당수 유족과 합의하고 화재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항소심 재판 중 숨진 김 모 피고인의 방화였던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 고 밝혔으며, “이 씨가 병동의 벽체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것이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피해 발생이나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

2020년 4월 28일(화)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참여 방법 : 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

★ 문의 : 02-2670-9136 / 02-469-3976
nomoredeathact2020@gmail.com

★ 향후 일정

5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워크숍
7월 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입법발의단체